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주의 요구

제 목 사전동의 없이 부적절하게 개인정보 조회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당진시 ○○○동 지방○○○○○ ○○○
(전 ○○○동)
- ② 충청남도 당진시 ○○○○과 지방○○○○○ ○○○
(전 ○○읍 지방○○○○○)
- ③ 충청남도 당진시 ○○읍 지방○○○○○ ○○○
- ④ 충청남도 태안군 ○○과 지방○○○○○ ○○○
- ⑤ 충청남도 태안군 ○○읍 지방○○○○○ ○○○

내 용

충청남도 당진시 지방○○○○○ ○○○은 2012. 7. 30.부터 2017. 12. 31.까지 ○○○동에서, 당진시 지방○○○○○ ○○○는 2015. 10. 12.부터 2017. 5. 21.까지 ○○읍에서, 당진시 지방○○○○○ ○○○는 2017. 5. 2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읍에서, 태안군 지방○○○○○ ○○○은 2005. 7.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태안군 지방○○○○○ ○○○는 2011. 8.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읍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충청남도 내 각 시·군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별 주민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세목별 과세내역, 체납내역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¹⁾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인한 개인정보 조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목적외의 용도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사전 정보조회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 1)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 정부합동감사기간 중 최근 2년간(2016. 1. 1. ~ 2017. 10. 31.) 충청남도 내 각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별 개인정보 조회내역을 추출하여 해당 직원과 납세자와의 관계, 조회 사유 등을 확인한 결과 납세자 본인의 구두요청, 지방세정보시스템 숙달 및 테스트를 위한 조회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

또한 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경위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없이 사후에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전에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음을 소명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납세자의 명확한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특히 충청남도 당진시, 태안군에서는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확한 사전동의 없이 조회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당진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 지방○○○○○ ○○○, 지방○○○ ○○ ○○○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납세자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 지방○○○○○ ○○○를 훈계처분하

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납세자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은

[주의] 향후 납세자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